

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시행 안내

전주성심여자중학교 연구부

I 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일과표 및 시간표

구분	시작	종료	04.23.(금)			04.26.(월)			04.27.(화)					
			1학년	2학년	3학년	1학년	2학년	3학년	1학년	2학년	3학년			
조 회	고사 준비	08:40	08:50	응시자 유의사항, 부정행위예방 등 사전 교육 및 응시현황 기재			응시자 유의사항, 부정행위예방 등 사전 교육 및 응시현황 기재			응시자 유의사항, 부정행위예방 등 사전 교육 및 응시현황 기재				
1교시	준비령	08:55	09:00			사회	원격수업	영어		원격수업	국어	국어		
	본령	09:00	09:45											
2교시	준비령	09:55	10:00	영어*				역사	역사					
	본령	10:00	10:45											
3교시	준비령	10:55	11:00	수학*		영어		과학	과학				수학	수학
	본령	11:00	11:45											

※관할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 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.

※1학년 영재교육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는 자체 시험과목임. 다만, 내신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반영되지 않음.

II 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출제범위

1학년 ※영재교육추천대상자 선발시험

과목	출 제 범 위	출제교사
영어	1, 2단원	김정희
수학	1단원(pp. 12~61)	김옥

2학년

과목	출 제 범 위	출제교사
국어	1, 2단원(pp. 12~93)	이효미
영어	1, 2단원	김정희, 이보람
수학	1, 2단원(pp. 10~57)	홍성천
과학	1, 2단원(p. 86까지)	박영제
역사	p. 39까지	안민정

3학년

과목	출 제 범 위	출제교사
국어	1, 2단원	김윤석
영어	1, 2단원(p. 47까지)	김민석
수학	p. 83까지	김학병
과학	1, 2단원(pp. 10~95)	김지연
사회	p. 53까지	진금주
역사	역사I pp. 200~221, 역사II(별도 안내)	박종기, 안민정

Ⅲ 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대상별 출결 및 성적처리 안내

대상	상황	방법	출결처리	성적처리 (인정점 부여)
등교중지 학생* -확진학생 -의사학생 -조사대상유증상학생 -자가격리학생 -유증상학생	-개인·일부 학생 단위 발생	-해당 학생 귀가 조치	-출석인정결석 처리 -별도 시험실 제공 불가	-인정기준점수의 100% ※평균점수비율(전입생 제외) 활용 인정점 산출식: 인정점=인정기준점수×부여비율(100%) ■ 인정기준점수=(결시고사평균×기준고사점수)/기준고사평균
	-학급 단위 발생	-시험일정 조정 우선 검토 ※조정 불가피한 경우 -해당 학생 귀가 조치		
	-학년(교) 단위 발생	-시험일정 조정 우선 검토 ※조정 불가피한 경우 -학교시설 이용 제한 조치		
고위험군 학생**	-기저질환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 등)을 가진 개인·일부 학생 -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학생	-증빙서류 제출 및 학교장의 사전 허가에 한함. -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출결상황 및 성적 처리	-질병결석 처리 -별도 시험실 제공 가능	-인정기준점수의 80% ※평균점수비율(전입생 제외) 활용 인정점 산출식: 인정점=인정기준점수×부여비율(80%) ■ 인정기준점수=(결시고사평균×기준고사점수)/기준고사평균
기타 미등교 학생*** -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-기타결석(감염 우려 등) -미인정결석(장기결석 등)	-감염병 위기경보 단계(심각, 경계)에 따른 한시적 교외체험학습 -감염병 위기경보 단계(심각, 경계) 시 사전 허가한 기타결석 -증빙서류 미제출, 장기결석, 허가하지 않은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미인정결석	- 교외체험학습: 10일 이내, 가정학습 포함 신청 가능 ※정기고사 기간 신청 불가(학교장 결정) - 기타결석: 감염 우려 등 기타 사유로 증빙서류(학부모확인서 등) 제출 및 사전 허가(학교장 결정)	- 예고된 평가(정기고사 등) 시 미인정결석 처리 -별도 시험실 제공 불가	- 최하점의 차하점 -인정기준점수의 70% ※평균점수비율(전입생 제외) 활용 인정점 산출식: 인정점=인정기준점수×부여비율(70%) ■ 인정기준점수=(결시고사평균×기준고사점수)/기준고사평균

***등교중지 학생** : 학교보건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등교중지된 학생으로, 임상 양상과 무관하게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감염이 확인된 학생(확진학생),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도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(의사학생),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발병이 의심되거나,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,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등이 나타나는 학생(조사대상유증상학생),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거나, 가족(동거인)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(자가격리학생), 37.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, 소화기 증상(구토, 설사 등) 등이 나타나는 학생(유증상학생)이 해당함.

****고위험군 학생** 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져 기타 사유로 인한 미등교학생으로, 개인·일부 학생의 경우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성적 등을 처리함.

*****기타 미등교 학생** : 기타 개인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미등교한 학생으로, 가정학습을 한시적으로 포함한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, 감염 우려 등의 기타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한 기타결석, 그 외에 장기결석 등의 미인정결석이 해당함. 다만, 정기고사 기간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아니함.